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83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19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박철성 의원 (찬성자 23명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5년 6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철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,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. 이에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, 그 설치와 관리·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‘스마트쉼터’를 추가함(안 제2조제5호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쉼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스마트쉼터를 포함시켜 설치와 관리·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·그 밖에 시설물로서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삭 제	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횡단보도 쉼터(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)	5. ----- 쉼터, 스마트쉼터(횡단보도 쉼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·운영)-----

■ 스마트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

- 스마트쉼터는 폭염·한파·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, 시민들에게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휴대폰 충전기,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공공 휴게시설로, 2020년 성동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


[그림] 서울시 스마트쉼터 (중구, 종로구)

- 특히 자치구들은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버스정류장 인근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, 2025년 3월 말 기준 서울시 스마트쉼터 215개소 중 약 95.4%인 205개소가 버스정류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.

[표] 스마트쉼터 운영 현황

(2025.3월 말 기준)

연번	자치구명	총대수	유지관리방식	소관부서
합 계		215		
1	종로구	2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2	중구	20	민간광고	교통행정과
3	용산구	6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4	성동구	55	자체관리	스마트도시과
5	광진구	10	자체관리	도시안전과
6	동대문구	14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7	중랑구	9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8	성북구	1	자체관리	도시안전과
9	강북구	2	자체관리	디지털정보과
10	도봉구	11	자체관리	교통행정과 (9) 공원여가과 (2)
11	노원구	1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12	은평구	12	공단위탁	스마트정보과 (11) 공간계획과 (1)
13	서대문구	9	자체관리	도로과

14	마포구	-	-	-
15	양천구	3	자체관리	스마트정보과
16	강서구	8	자체관리	스마트정보과
17	구로구	2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18	금천구	-	-	-
19	영등포구	-	-	-
20	동작구	6	자체관리	교통행정과
21	관악구	3	무상하자기간	스마트정보과
22	서초구	-	-	-
23	강남구	32	자체관리 2 민간광고 30	환경과
24	송파구	1	자체관리	맑은환경과
25	강동구	8	자체관리	교통행정과 (7) 생활체육과 (1)

- 그러나 서울시는 스마트쉼터가 당초 폭염·한파·미세먼지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응형 쉼터라는 점에서 버스정류소 부대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로 보고 있으며,
-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¹⁾에 따라 버스정류소 전후 20미터 이내 구간(정차범위)²⁾에 설치된 스마트쉼터는 ‘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대상 시설물’

1)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

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
4. 한전박스

5. 가로변 상점

6. 가로변 화단

7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(정의)

4. “정차범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
- 가.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.
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
- 나.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

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임.

- 실제로 일부 스마트쉼터는 보도 폭이 협소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, 차도와의 간격이 좁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버스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민원이 접수된 사례³⁾도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스마트쉼터를 버스정류소 정차범위(전후 20m)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⁴⁾하고 있는 상황임.
- 다만, 스마트쉼터는 시민 이용 만족도가 높고, 추가 설치 요청⁵⁾도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설치 제한보다는 대중교통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, 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.

3) '연서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승하차 불편', 응답소 민원, 2024.9.13..

'스마트쉼터 명확한 시설 기준 마련 요청', 국민신문고, 2024.11.11..

4) '정류소 정차범위 내 스마트쉼터 설치 제한 안내', 버스정책과-7397, 2024.2.27..

'정류소 정차범위 내 스마트쉼터 설치 제한 안내', 버스정책과-6108, 2024.8.7..

'버스정류소 정차범위내 쉼터 설치 제한 안내', 버스정책과-12584, 2025.4.2..

'버스정류소 정차범위내 쉼터 설치 제한 안내 및 사고사례 전파', 버스정책과-16206, 2025.4.25..

○ 자치구 협조사항

- 시내버스 정차범위 내 쉼터 등 시설물 설치 제한

※ 정차범위 : 보도에 시내버스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

- 區 교통주무부서(교통행정과 등)에서는 타 부서(생활안전과, 스마트도시과 등)에서 쉼터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 철저

※ 특히, 시민 안전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스마트쉼터는 신속히 이전 및 철거

5) '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쉼터 설치 요청', 상상대로서울 시민의견, 2023.7.17..
'심야시간대 N버스 운행구간 스마트 쉼터 설치 요청', 응답소 민원, 2024.5.1..

■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제5호는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서울시가 통일성 있게 마련하려는 것임.
- 현행 규정상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, 각 자치구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이나 자체 방침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가 및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([표] 참조).

[표] 자치구 스마트쉼터 설치 근거

연번	자치구명	자체 설치근거
1	종로구	○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 ○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 ○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4조
2	중구	○ 행정기본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
3	용산구	○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○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
4	성동구	○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○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
5	광진구	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○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(재난예방조치등)
6	동대문구	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○ 도로법제2조제2항가목
7	중랑구	○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확대조성계획 수립추진 ○ 중랑스마트쉼터확대설치종합계획
8	성북구	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(국가 등의 책무) ○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
9	강북구	-
10	도봉구	○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호 ○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, 도로법 제2조의 2호 가 ○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 제2조의 2호,제5조 1항의 6호
11	노원구	○ 자치안전과-18723호(2021. 7. 23.) "2022.洞(동)단위 주민자차예산 운영계획" ○ 미디어홍보담당관-12920호(2022. 2. 22.) "2022년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운영계획"
12	은평구	-
13	서대문구	○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편의시설

14	마	포	구	-	
15	양	천	구	○ 서울시 주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에 따른 '2021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계획'	
16	강	서	구	○『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 선정』 -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선정(2023. 7. 12.) ○ 2022~24강서맞춤형스마트도시이행계획(스마트그린쉼터확대·운영)	
17	구	로	구	○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(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)	
18	금	천	구	미설치	
19	영	등	포	구	미설치
20	동	작	구	-	
21	관	악	구	○ 관악구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 ○ 2022하반기지역현안특별교부세선정	
22	서	초	구	미설치	
23	강	남	구	○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	
24	송	파	구	○ 서울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25	강	동	구	○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, ○ 서울특별시시내버스정류소등의정비및관리조례	

- 이로 인해 자치구별 설치 기준이 상이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설치된 스마트쉼터는 공공성과 편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.
- 따라서,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서울시가 통일된 설치·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히 관리·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,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조치라 사료되며,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철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박철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남창진,
박수빈, 박승진, 봉양순,
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최기찬,
최민규, 한 · 신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,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. 이에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, 그 설치와 관리·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‘스마트쉼터’를 추가함(안 제2 조제5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횡단보도 쉼터, 스마트쉼터(횡단보도 쉼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 · 그 밖에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삭 제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횡단보도 <u>쉼터</u> (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)	5. ----- <u>쉼터, 스마트쉼터</u> (<u>횡단보도 쉼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·운영</u> -----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'스마트쉼터'를 추가(안 제2조제5호)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